

참여연대 Issue Report

이슈리포트

2013. 05. 02 | 제2013-02호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이명박 정부 기간 정부가 국민을 고소한 30개 사건들

“박근혜 정부는, 명예훼손을 도구로

정부비판 입막음 소송 반복하지 말아야”

요약	3
----	---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사례 30건 분석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들	4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의 국민입막음 소송, 결과는 F학점	9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	12
국민입막음 소송을 당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 본 입막음 소송의 악영향	15
국민 입막음 소송에 사용된 법률들과 개정안	16

결론

‘국민입막음 소송’중단과 제도개선	18
--------------------	----

취지 및 방법

이명박 정부(2008년 ~ 2013년 2월) 에서 국가 또는 공무원이 공적 사안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축시킨 사례가 많았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현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청원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공공참여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보완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평가받고 있고 대법원도 “국가(기관)나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지난 5년 동안 국가기관, 공무원 등이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국가의 사법절차를 동원해 억압한 것은 수사나 재판의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체나 공공참여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공적발언과 공공참여를 위축시키는 국민 입막음 소송의 주요사례 30건을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적 비판,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입막음 소송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2008년~2013년 2월까지 언론기사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 중 국가, 공무원¹ 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30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음. 따라서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통계로서의 의미부여는 배제함. 주로 언론기사, 판결문,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한 사실관계 및 결과 확인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음².

● 참여연대 제안

- 국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함
- 국회 제출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1 전직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이었던 시기의 직무와 관련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 리포트에서는 전, 현직 공무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음.

2 본 리포트는 2013. 5. 2. 발행된 같은 제목의 리포트에 담지 못한 13건의 국민입막음소송을 더해 2013. 5. 20. 재발행하였음.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사례 30건 분석

1.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들

1) 입막음 소송이란

지난 5년 동안 국가기관, 공무원 등이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 된 적이 많았음.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공무원의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한 소송제기는 그 최종 결과가 무혐의, 무죄 등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결국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여론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또 혹여 유죄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국가기관 또는 기관장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

2) 조사 대상 주요 입막음 소송 내역

○ 아래 <표1>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30건의 주요 국민 입막음 소송들임

<표1> 국민입막음 소송 30건 현황 (고소, 소 제기 일자 순서)			
사건일	사건명	주제	상세내용
2008	최재경 부장검사 등 vs.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BBK 사건 수사 축소 의혹	2007년 대선 후보 이명박의 BBK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김씨를 회유 혹은 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과 담당기자에 대해 최재경 전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 등 BBK수사팀 10명이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농림부 vs. 조능희 PD 등 명예훼손 고소 ³	광우병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제작진에 대해 농림부가 검찰에 수사의뢰 ⁴ 그후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국무총리실 vs. 김종익 명예훼손 수사의뢰	대통령 풍자 동영상	블로그에 대통령 패러디 동영상을 게시한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서울시 vs.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현장 시정지원단 제도운영관련	전공노 서울시지부, 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가 “서울시 현장지원단 소속 직원들이 무더위에 강행된 국토순례로 임원했고, 농장봉사 때 물도 없이 혹독한 노역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을 2008년 10월 명예훼손으로 고소
2009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경향신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루머	경향신문이 2009년 4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지 않은 배경을 다루면서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대변인이 강남 룸살롱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고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변인이 경향신문 편집국장, 정치부장, 기사작성 기사 3명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루머	위와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국세청 vs.김동일 명예훼손 고소	노무현 서거와 국세청 세무조사	참모총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09년 5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태광실업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전직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 등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일나주세무서 직원을 국세청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국정원 vs. 박원순 손해배상청구소송	국정원 민간 사찰과 간섭	2009년 6월 10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임원들까지 전부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한 민간 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국정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특혜 의혹 주장 광고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방식을 수익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하자 지하도상가상인들이 특정기업의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하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상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시 특혜 의혹 주장 광고	위와 동일한 사안 관련 6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경찰 vs 이계덕 명예훼손 고소	경찰비판하는 노래 (신노병가)	이계덕 씨가 경찰을 비판하는 노래 <신노병가>를 발매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경대장이 명예훼손으로 2009년 8월 고소
	이동관 청와대홍보수석 vs.홍성태	고위공직자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칼럼에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표를 게재하였으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병역면제

	명예훼손 고소	병역면제 의혹 제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게재 5시간 만에 원자료를 삭제하고 이 수석에게 사과의 뜻을 밝힘. 그러나 이동관 수석은 고의성이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유인촌 문화부장관 vs. 네티즌 명예훼손 고소	유 장관 풍자 동영상	피겨스케이이트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장관과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중 김 선수가 장관을 회피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상을 게시한 네티즌 8명에 대해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대구·경북 지역민들 폄 하 했 다 는 경북일보 보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북일보가 '이 수석이 대구·경북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2010.년 3월 경북일보 간부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구·경북 지역민들 폄 하 했 다 는 경북일보 보도	같은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명진 스님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의 봉은사 운영 간섭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봉은사 주지 직영 외압설' 관련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을 경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10년 5월 고소
2010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김영국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의 봉은사 운영 간섭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봉은사 외압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을 2010년 5월명예훼손으로 고소
	김태영 국방장관 vs. 박선원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2010년 5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다 갖고있다"며 정부가 천안함침몰 원인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미국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을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태영 국방장관 등 vs.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천안함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와 군당국이 천안함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원인은 좌초 및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위원을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성찬해군 참모총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합동참모본부 대령7명 vs 이정희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부가 함수·함미 분리 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합동참모부 산하 대령 등 관계자들이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합참 대령 7명이 2010년 5월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1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민간 인 사찰 관련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보원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는 팀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 명예훼손 고소	쌀개방 추가 협상 의혹	내부고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국무부의 비밀외교전문을 인용해 ‘김종훈, 쌀개방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고 보도한 한겨레와 기자 3명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⁴	쌀개방 추가 협상 의혹	위와 동일한 사안 관련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2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발	‘원세훈 국정 원장 열대과 일 반입하다 세관 적발’ 발 언	2012년 1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유럽과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과일 세박스를 사오다 세관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군검찰 vs. 이 모 대위 대통령 상관모욕죄 기소	대통령 비난 트위터	2011년 12월 경 퇴근 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 등 13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역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vs. 김지운 모욕죄 고소	제주해군기지 풍자 ‘해적기 지’ 발언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해적기지반대합니다. 강정마을,구름비바위지켜냅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김지운 당시 통합진보당청년비례대표후보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
	수자원공사 등 vs. 박창근 교수 명예훼손 고소	4대강 사업 비판	2012년 6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동강 특위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창녕 함안보의 콘크리트 연직이음부에서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하자 수공이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에 대해 수자원공사 등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국정원 vs.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 관련 ‘십알단’ 폭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가 2012년 12월 방송을 통해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선거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선거)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나꼼수 멤버들(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국정원 vs. 서영석	2012년 대선 관련 국정원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알바 또다른 현장을 현재 급습해 증거를 확보중”이

	명예훼손 고소	댓글알바 폭로	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서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3	국정원 vs.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언론인터뷰, 일간지기고문 등을 통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은 위기"라면서 "정치관료가 정보 와예산,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국정원 직원명의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30개의 사건 종류 구분

<표2>사건종류별로 본 국민입막음소송 30건(원고 가나다순에따라)	
형사소송 -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수사의뢰, 검찰 인지수사 등	
24건	경찰 vs 이계덕 고소 국무총리실 vs. 김종익 수사의뢰 국세청 vs. 김동일 고소 국정원 vs. 이석현 고소(국정원 박근혜 사찰 주장관련) 국정원 vs 이석현 의원 고발(원세훈 원장 명예훼손) 국정원 vs. 나꼼수 고소 국정원 vs. 서영석 고소 국정원 vs. 표창원 고소 군검찰 vs. 이 모 대위 기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 고소 김태영 국방장관 vs. 박선원 고소 김태영 국방장관 등 vs. 신상철 고소 농림부 vs. 조능희 PD 등 고소 서울시 vs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고소 수자원공사 등 vs. 박창근 교수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서울지하도상가대표 고소 유인촌 문화부 장관 vs. 네티즌 고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홍성태 고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향신문 기자 고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고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명진 스님 고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김영국 고소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vs. 김지윤 고소 합동참모본부 대령7명vs 이정희 고소
민사소송 -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6건	국정원 vs. 박원순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서울지하도상가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

- 3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제기된 민형사 소송은 모두 7건임, 본 리포트에서는 이 중 농림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되어 정운천 전 장관이 고소 접수한 사건만 다룸
- 4 한겨레의 동일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 정보보도 청구 소송은 본 리포트에서는 제외함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향신문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재경 부장검사 등 vs. 주진우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	--

2.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의 국민입막음 소송, 결과는 F학점

아래 표는 2013년 4월말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살펴본 이명박 정부 기간 중의 주요 ‘국민 입막음 소송’ 30건의 진행현황 및 결과를 정리한 것임.

이 사건들의 결과를 보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정부나 공무원을 비판한 국민을 처벌해달라거나 손해를 배상해라는 ‘국민 입막음’ 소송이 남발되었음이 잘 드러남.

우선 24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제기한 고소 또는 (군)검찰의 공소제기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함.

24건 중 3건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시민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났고, 7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철회하였음.

검찰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1심이 진행 중인 2건도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명예훼손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6건의 민사사건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음.

<표3> 현재(2013.4)까지의 30개 소송(고소고발포함) 진행 현황(결과)

구분	현황(결과)	상세분류	건수	비고
형사	정부 패(敗) 18건	검찰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	3건	3건 모두 대법원 확정
		불기소	7건	
		기소유예	1건	
		고소 취소 사건 종결	7건	검찰 수사 중 고소 취소 또는 1심 선고 전 취소
	정부 승(勝) 2건	유죄 판결	2건	1건은 대법원 유죄확정 1건은 항소심 진행 중
	진행 중 4건	검찰 수사, 1심 진행 중	4건	3건 검찰 수사중, 1건 1심 진행중
민사	정부 패 6건	손해배상 책임 없음	3건	2건 대법원 확정, 1건 1심 확정
		원고 소 취하	3건	연관 사건 형사재판 무죄에 따른 것 1건은 정정보도 후 소 취하
	정부 승 0건	손해배상 책임 있음	0건	
합계			30건	

<표4>사건별 진행현황

사건명	결과
최재경 부장검사 등 vs. 주진우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3천60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2심/3심 손배배상책임 없음
농림부 vs. 조능희 PD 등 명예훼손 고소	1심/2심/3심 무죄
국무총리실 vs. 김종익 명예훼손 수사의뢰	검찰 기소유예 처분
서울시 vs. 전공노 김경웅 지부장 등 명예훼손 고소	1심 벌금 200만원/2심 벌금150만원/대법원 확정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 기자 명예훼손 고소	고소 취소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 취하
국세청 vs. 김동일 명예훼손 고소	1심 벌금 70만원, 2심/3심 무죄
국정원 vs. 박원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2심/3심 손해배상책임 없음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명예훼손 고소	1심 500만원 벌금 선고, 2심/3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손배배상책임 인정 2심 형사사건 무죄에 따른 화해(원고소취하)권고 종결
경찰 vs. 이계덕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처분(무혐의)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홍성태 명예훼손 고소	고소 취소
유인촌 장관 vs. 화피연아게시자 명예훼손 고소	고소 취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고소 취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 취하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명진스님 명예훼손 고소	고소 취소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김영국 명예훼손 고소	고소 취소
김태영 국방장관 vs. 박선원 명예훼손 고소	검찰 불기소 처분
김태영 국방장관 vs.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1심 진행 중
합동참모본부 대령7명 vs. 이정희 명예훼손 고소	검찰 불기소 처분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소	검찰 불기소 처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vs.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고소	고소 취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vs. 한겨레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손해배상책임 없음 확정(2심 중 원고 항소 취하)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 처분
군검찰 vs. 이 모 대위 대통령상관모욕죄 기소	1심/2심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현재 3심 진행 중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vs. 김지운 모욕죄 고소	검찰 불기소(무혐의) 처분
수자원공사 등 vs. 박창근 교수 명예훼손 고소	수자원 공사 고소 - 2013.1.7.무혐의 종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소 - 2013.2.19.무혐의 종결
국정원 vs.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검찰 수사 중
국정원 vs.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고소	검찰 수사 중
국정원 vs.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검찰 수사 중

아래 표는 각각의 사건별로 진행현황(결과)을 정리한 표임

3.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이전부터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 “국가기관의 업무처리,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법원의 이러한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 비판을 이유로 국민들을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더욱 ‘국민 입막음’과 위축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음

아래는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최근까지 나온 법원 판결 중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시사항을 발췌한 것임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고 그 향수 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며, 아무런 제한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론가 봉쇄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29379판결)
-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론가 봉쇄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산하에는 실로 다양하고 많은 국가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10. 9.15 선고, 2009가합103887판결)

국가기관의 업무처리,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9.25.선고 2008도4889,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전원재판부 결정)

-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29379판결)

4. 국민입막음 소송을 당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 본 입막음 소송의 악영향

○ ‘국민 입막음’ 소송을 당한 국민이 소송에 붙잡힌 시간

입막음 소송의 피해자들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년 이상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하거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응해야 함. (<표5>참조).

공익적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공직자들을 비판한 이유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심리적, 물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와 공직자들에 제기한 ‘국민 입막음’ 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아도, 이들 국민들이 입은 심리적 물리적 부담은 정부에 의한 부당한 피해라고 볼 여지가 큼.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한 것임.

<표5> 입막음 소송 종결까지 소요 기간

사건명	소요기간
최재경 부장검사 등 vs. 주진우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약 4년 7개월
서울시 vs.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명예훼손 고소	약 3년 6개월

농림부 vs. 조능희 PD 등 명예훼손 고소	약 3년 3개월
김태영 국방장관 등 vs.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약 3년 이상 (계속 진행 중)
국세청 vs. 김동일 명예훼손 고소	약 2년 5개월
국정원 vs. 박원순 손해배상청구소송	약 1년 9개월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소	약 1년 8개월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명예훼손 고소	약 1년 6개월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	약 1년 6개월
군검찰 vs. 이 모 대위 상관모욕죄 기소	약 1년 2개월 이상 (계속 진행 중)
합동참모본부 대령 7명 vs. 이정희 명예훼손 고소	약 1년 2개월
국무총리실 vs. 김종익 명예훼손 수사의뢰	약 1년 1개월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발	약 1년 1개월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 vs.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고소	약 1년
김중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한겨레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약 1년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vs. 김지윤 모욕죄 고소	약 10개월 (계속 진행 중)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홍성태 명예훼손 고소	약 8개월
수자원공사 등 vs. 박창근 교수 명예훼손 고소	약 7개월
경찰 vs. 이계덕 명예훼손 고소	약 6개월
김태영 국방장관 vs. 박선원 명예훼손 고소	약 5개월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약 4개월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약 4개월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명진스님 명예훼손 고소	약 3개월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약 3개월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약 3개월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김영국 명예훼손 고소	약 2개월
유인촌 장관 vs. 회피연아게시자 명예훼손 고소	약 1개월
국정원 vs.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현재 진행 중 ⁵
국정원 vs.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고소	현재 진행 중
국정원 vs. 표창원 전 교수 명예훼손 고소	현재 진행 중

5 국정원의 나꼼수, 서영석, 표창원에 대한 고소는 보고서 작성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인 2012년 12월-2013년 1월 사이에 이루어져서, 기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았음.

○ ‘국민입막음’ 소송당한 국민의 증언

소송을 당한 이들의 대부분은 국민입막음 소송을 당하면, 재판 결과나 수사와 재판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 경제적 부담, 위축감, 자기검열을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기도 함.

또한 이들을 지켜보는 지인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같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거나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됨.

그리고 이같은 심리적, 물리적 압박이야말로 입막음 소송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아래는 ‘국민 입막음’ 소송을 당한 이들이 언론 인터뷰 또는 참여연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설명한 심리적, 물리적 피해임.

● 수자원공사로부터 고소당한 박창근 교수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금도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세게 하지 말라’며 걱정을 한다.”(경향신문 2013.1.18. 기사)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다. 아마 유죄가 나면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그래야 한다고..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무혐의가 났지만 사람들은 결과에 신경 안 쓴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허위사실유포자로 떠들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지 결과가 어찌됐건 상관 안한다...지금도 인터넷 치면 그렇게 나온다..이걸로 내 명예야말로 훼손된 것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배우는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2013.4.4. 참여연대와의 전화 인터뷰)

● 국세청으로부터 고소당한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

“처음에 일을 당했을 때 머릿속이 새하얘졌었다. 가장 먼저 법률적인 부분이 생각났다.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배신자,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 ‘당신은 죄가 없다’는 말만 해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나야 각오가 되어있었으니까 괜찮은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했다.”(오마이뉴스 2011.12.28)

● 정운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pd수첩 조능희pd

정부 정책 비판한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수사의뢰하고, 검찰은 수사 시작하고 소환에 응하고... 언론자유 심하게 위축된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오마이뉴스 2009.03.26 기사)

<PD수첩> 보도 뒤 광우병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체가 줄었다. 광우병 단어만 들어가도 위축되는 모양새다....“<PD수첩>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광우병에 대한 문

제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사실 보도조차 축소되고 있는 것은 <PD수첩>의 부작용이다.. (미디어오늘 2009-10-01 기사)

-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 차 모 씨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서류접수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3, 4번 눌러야 한다. 고소당하고 언론에 이름 나가면서 한국에서 취직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많이 위축됐다.”
(한겨레 2012.11.21. 기사)

- 오세훈 서울시장로부터 고소, 손해소송 당한 서울지하도상가대표 정 모 씨

“시달렸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었겠나. 요즘 봉쇄소송이라는 게 있다. 시민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거는....(중략)...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것처럼 소송을 거는 거다. 서울시는 나를 타깃으로 삼은 거고. 대법원에서 딱 끝나니까 서울시는 이런 심정일 거다. ‘밀쳐야 본전’. 돌 던져서 맞으면 잘 한 거고, 안 맞고 피하면 네(시민) 운이 좋은 거고.....돌 맞은 개구리지.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오마이뉴스 2011.07.13 기사)

- 이동관 전 청와대수석으로부터 고소당한 홍 성태 교수

“인용한 표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곧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표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사도 비쳤다..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사건이 있고 4개월 뒤에야 고소가 되었고, 고의가 없이 단순실수임을 주장했으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의가 아니었음이 정황으로 봐서 분명한데도 검찰에서 1년 구형했다...1심 선고 1주일 앞두고서야 고소 취하해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으나 조사받고, 불려가고, 꼬박 8개월을 시달렸다..”(2013.5.2. 참여연대와의 전화인터뷰)

- 국무총리실의 수사의뢰 후 기소된 김종익 씨

처음 일을 당했을 때 너무 경황이 없고 힘이 들었어요. 뭔가를 먹으면 계속 토했습니다. 거의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시퍼런 권력의 위세에 눌린 당시의 상황에서 달리 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 나를 향해 오는 것 같았고....(위클리경향 2010.12.28.인터뷰 기사)

경제적 고통도 크다. 사건 후 수입은 제로다. 1년 반 동안은 저축한 돈으로 버텼다. 대학생인 자녀들 등록금에 빚도 늘었다(경향신문,2012.3.24. 기사)

5. 국민 입막음 소송에 사용된 법률들과 개정안

-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 입막음’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법률은, 명예훼손죄 또는 명예훼손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민법 등임. 인터넷 등을 통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내세우기도 함.

<표6>30개 주요 국민 입막음 소송에 사용된 법률들		
형사소송 -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고발, 수사의뢰, 검찰 인지수사 등		
적용 법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소(박근혜 사찰 건) -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발(원세훈 원장 출장 건) - 농림부 vs. 조능희 PD 등 명예훼손 고소 - 서울시 vs.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명예훼손 고소 - 수자원공사 등 vs. 박창근 교수 명예훼손 고소 -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명예훼손 고소 -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김영국 명예훼손 고소 -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명진스님 명예훼손 고소 - 합동참모본부 대령7명 vs. 이정희 명예훼손 고소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국정원 vs.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vs.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고소 - 김태영 국방장관 vs. 박선원 명예훼손 고소 - 김태영 국방장관 등 vs.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모욕죄	- 경찰 vs. 이계덕 명예훼손 고소 - 국무총리실 vs. 김종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 국세청 vs. 김동일 명예훼손 고소 - 국정원 vs.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 국정원 vs. 서영석 명예훼손 고소 - 유인촌 장관 vs. 회피연아게시자 명예훼손 고소 -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홍상태 명예훼손 고소 -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vs. 김지윤씨 모욕죄 고소
	군형법 제64조2항 상관모욕죄	- 현역군인 상관모욕죄(이명박대통령) 사건
민사소송 -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적용 법률	민법 제751조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 국정원 vs. 박원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vs. 한겨레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 최재경 부장검사 등 vs.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 정부와 공직자들이 명분없고 실제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고,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국민 입막음’ 소송 중단을 위해 필요함.

현재 국회에는 국가, 공무원 등이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아래 <표7>참조)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기 어려운 사안조차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적, 심리적, 재정적 위협을 가해 국민의 공공참여를 막으려는 입막음 소송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표7> 명예훼손/모욕죄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개정안	관련조항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2012-6-22 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죄 폐지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 추가 - 공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 친고죄 조항 신설
형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2012-7-26 발의	제311조 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청원 참여연대 2012-9-4 청원	제307조 명예훼손죄	-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함 -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친고죄 규정 신설
	제311조 모욕죄	폐지

6. 결론. ‘국민입막음 소송’ 중단과 제도개선

지난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정부, 공직자들이 공적 사안에 관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형법과 민법을 근거로 해 고소고발과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는 것이, 여러 사안에서 결과로 확인됨

- 즉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승산이 없는 사건임에도 국가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발), 손해배상 소를 강행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또 정부와 공직자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이,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대인관계의 단절, 재정적 부담 등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이야말로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국민입막음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와 공직자가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이용해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 남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임

- 박근혜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고소나 소송으로 대응하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
- 더 나아가 승패를 불문하고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형법 등의 명예훼손죄와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3-02호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발 행 일 2013. 5 . 2.

발 행 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박경신 교수)

담 당 이지은 정민영 간사 02-723-0666 jieun@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7001-060

주 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